

광주장애인 가족 송년행사 ‘성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산하 35개 단체 비롯 700여명 참석

“올 한해 서로 격려하고 새로운 한 해 준비하는 기회로”



이용섭 광주시장이 17일 오전 서구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2회 광주장애인 송년행사’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제32회 광주장애인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행사는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산하 35개 장애인단체를 비롯해 유관기관 장애인과 가족,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동찬 광주시의장,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등도 참석해 기관별 유공자를 표창하며 지역 장애인들을 격려했다.

무안군, ‘함께하는 정신건강교실’ 한 해 마무리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만성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 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화, 금요일마다 총73회 ‘함께하는 정신건강교실’을 운영하였다.

‘함께하는 정신건강교실’은 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능력 향상, 사회기술 강화, 약물 및 증상관리

등 질환의 재발 방지와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돋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투입하여 신체활동, 요리요법, 정신재활 등 다양한 주제들로 운영되었다. 특히 이번 년도는 자연생태·문화체험과 직업 재활교육 등 인근 관광지 나들이 및 지역기관 방문 등 외부활동을 강화하여 운영한 데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최고의 금손상, 출석왕상, 분위기 메이커상 등 개인의 특성과 그간 활동 내용을 반영하여 모두에게 맞춤형 상장을 수여하는 뜻깊고 즐거운 시간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회원은 “함께 한 모든 시간이 즐겁고 소중했다.”며, “그동안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선생님 모두에게 대단히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내년 2월28일부터 엄마·아빠

함께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가족돌봄휴가 年최대 10일 …근로시간 단축도 도입

내년부터 부모 동시 육아 휴직이 가능해지고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2020년 2월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 휴직이 가능해진다.

기존 시행령은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 중인 근로자는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육아 휴직 급여도 부모에 함께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이 보다 촉진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시유로 연간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준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업주가 휴직·휴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도입된다.

지난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에, 2022년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시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개정 시행령은 육아 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영유아와 같이 살지 않게 되면 육아 휴직을 종료하게 한 기존 시행령과 달리, 근로자가 실제 양육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해 육아 휴직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1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양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임로 340번길 5

Together Gwangsan